

법무사전문인배상책임보험 예상질문에 대한 답변서

2024.8.2 기준

문 1) 『법무사전문인배상책임보험』(배상청구기준)이란 무엇입니까?

피보험자인 법무사 및 그 임직원이 전문인의 자격으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u>과실로 의뢰인 또는 제 3 자에게 직접적인 손해</u>를 입힌 경우 법률상 손해배상금 및 사고처리에 드는 제반 비용을 보상해 주는 상품입니다.

문 2) 보상하는 손해의 범위는 어디까지 입니까?

법률상 손해배상금은 판결액, 최종합의 및 화해액이 해당합니다.

단, 징벌적손해, 벌과금, 과태료, 서비스 수수료 반환금 등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u>사고처리에 드는 제반비용에는</u> 변호사 비용, 전문조사인(회계사 등)비용, 소송비용, 중재나 화해에 드는 비용, 공탁보증보험료, 대위권 보전비용, 기타 보험사의 동의 하에 지출한 비용이 있습니다.

문 3) 사무원의 횡령 등 부정행위 담보 특별약관이란 무엇입니까?

본 특별약관은 법무사가 입은 금전손실을 보상하며, 이는 고용한 사무원의 고의적이고 명백한 의도에 의한 직접 결과이거나 혹은 법무사를 대신하여 전문서비스 업무를수행하는 동안 사무원 자신의 경제적인 이득을 취할 목적으로 단독/타인과 공모하여행한 부정행위 또는 사기행위에 기인한 것을 전제로 합니다. 해당 특별 약관은선택가입 사항이며, 추가보험료가 발생합니다.

문 4) 이행보증보험과 법무사전문인배상책임보험은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

<u>이행보증보험은</u> 피해자 또는 제 3 자가 입게 되는 재산상의 손해 보장을 목적으로 하여 피해자의 보호에는 충실할 수 있지만 지급 후 구상권을 행사하므로 전문인 자신의 손해는 보장받지 못합니다. 그러나 <u>법무사전문인배상책임보험은</u> 보험금 지급후 구상권을 행사하지 않아 전문인 자신의 손해도 보장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이행보증보험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업무를 담보하지만 법무사전문인배상책임보험은 업무상 과실로 인해 발생한 손해배상책임을 보상하며, 전문인배상책임 보험가입으로 법무사법 제 26 조의 이행보증보험이나 공제가입을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문 5) 보험가입 전 업무의 담보여부 및 『고지의무』

이 보험은 보험가입 전의 업무로 발생한 사고나 가입 당시 이미 발생한 사고, 손해배상 원인이 될 수 있음을 알고 있었거나, 합리적으로 예견할 수 있었던 원인에 기인한 사고는 보상되지 않습니다. 또한 이러한 사실이 있는 경우 계약 체결 당시 반드시



보험회사에 고지하여야 하며, 고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보상되지 않거나 보험계약이 해지 또는 취소될 수 있으니 반드시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문 6) 보험가입 후 알릴 사항 및 『통지의무』

보험가입 후 피해자 또는 제 3 자로부터 손해배상청구를 받은 경우 또는 배상청구는 없었지만 사고의 발생이 예상되거나 인지한 경우에는 즉시 보험회사에 서면통보를 해야합니다. 피보험자는 상황통지의무가 있으므로 이러한 사실의 통보가 늦는 경우 또는 보험기간 내에 통보되지 않는 경우 보상되지 않거나, 보상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반드시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문 7) 『배상청구기준』증권과 『소급담보일』이란 무엇입니까?

배상청구기준증권이란 현재 유효한 보험증권의 보험기간 중에 소급담보일 이후 사고로 제 3 자(의뢰인 포함)로부터 피보험자에 제기된 최초의 손해배상청구 가 보상되는 증권입니다. 즉, 가입 증권(증명서)에 기재된 소급담보일(RETROACTIVE DATE) 이후의 업무에 기인한 사고로 보험종료일 사이에 발생된 배상청구에 대하여 보상이 이루어지며, 소급담보일이란 통상 최초 보험가입일 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매년 갱신이 이루어 질경우 소급담보일 이후의 업무가 계속 담보되지만 이때의 보상기준은 업무일이 속한 보험증권 가입조건을 따르는 것이 아니고 배상청구 당시의 유효한 보험가입 조건에 따라보상 이 됩니다.(약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문 8) 소급담보일(최초 보험가입일)이 2023년 7월 20일이고 수임일은 2023년 5월 1일이며 등기업무일이 2023년 9월 1일인 경우, 법무사의 과실로 인하여 등기업무에 하자가 있어 의뢰인이 손해를 보아 배상청구를 했다면 보상이 됩니까?

배상청구기준증권이 적용되고 있는 법무사배상책임보험에서 업무 수행일이 소급 담보일자 이후이고 배상청구가 보험기간 중에 제기된 경우 보험조건에 따라 보상이 이루어집니다. 위의 사례에서 사건의 수임일은 소급담보일 이전이지만 업무수행일이 소급담보일보다 이후이므로 보상이 됩니다. 그리고 업무상 과실을 발생 형태로 분류해 보면 작위에 의한 과실과 부작위에 의한 과실로 볼 수 있습니다. 작위에 의한 업무일은 통상 관련서류의 제출일이 될 것이며 부작위에 의한 업무일은 기한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그 기한의 마지막 날을 업무일로 볼 수 있습니다.

문 9) 『구상권』을 행사하지 않습니까?

보험금 지급 후 구상권을 행사하지 않으므로 실질적인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문 10) 『보상한도액』과 『자기부담금』이란 무엇을 말합니까?

보상한도액이란 사고 발생시 보험회사에서 지급되는 보험금의 상한선을 뜻하며 보상한도액이 높을수록 보험료는 비싸집니다. 보상한도액은 1 청구당 / 연간총한도 액로 나누어지며 1 청구당 한도는 1 사고에 대한 보상한도이고, 연간총한도액은 보험기간 1년 동안 보상 받을 수 있는 총 한도입니다.

<u>자기부담금이란</u>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금액으로 자기부담금 미만의 손해에 대해서는 보상되지 않으며 자기부담금을 초과하는 손해에 대해서는 전체 손해액에서 자기부담금액 차감 후 보상한도액 범위 내에서 보상됩니다. 자기부담금은 매 사고당 적용됩니다.

문 11) 보상하지 않는 손해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 가. 피보험자의 악의적 또는 사기적 부정행위
- 나. 전문업무의 수행과 관련 없는 신체상해 또는 재물손해
- 다. 중상, 비방 또는 명예훼손 등 인격침해
- 라. 유가증권, 부동산 또는 기타 투자관련 자문 업무 등
- 마. 피보험자의 지불불능 및 파산에 기인한 손해배상책임
- 바. 보험개시일 이전에 행한 업무에 기인한 손해배상책임 단, 갱신인 경우 최초 보험계약일이후에 행한 업무에 대하여 보상함.
- 사. 계약상 가중책임, 단, 법률상 배상책임은 담보함
- 아. 결과적 책임
- 자. 기타 보통약관 및 특별약관 보험조건에서 정하는 사항

문 12) 사고처리 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보험사고 예상 시 보험사에 즉시 서면 통보)

<u>피해자 또는 제 3 자로부터 손해배상청구를 받은 경우</u> 또는 배상청구는 없었지만 <u>사고의 발생이 예상되거나 인지한 경우에는 즉시 록톤코리아로 연락</u>을 주시기 바라며, 이는 <u>즉시 보험사에 서면에 의한 사고접수를 하여야 합니다.</u> (피보험자는 상황통지의무가 있으므로 상기 사실의 통보가 늦는 경우 보상되지 않거나, 보상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사고가 접수된 경우 록톤코리아는 보험회사에 이를 즉시 전달하고 보험회사는 손해사정인을 선임하거나 자체적으로 사고조사를 하게 됩니다. 사고조사는 경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약 3~4 주가 소요됩니다. 조사가 완료되면 사고보고서가 작성이되고 보험회사는 이를 기초로 하여 보험금을 정산하여 계약자에게 통보하고 보험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u>록톤코리아는 협상권을 가진 보험중개사로서계약자를 대변하여 보험계약 내용의 해석 및 사실관계의 판단에 개입을</u> 합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의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문 13) 합동사무소 및 법인의 보험가입은 어떻게 합니까?

동일한 상호를 사용하여 영업을 하고 있는 합동사무소 및 법인 소속 법무사는 2 인이상으로 보상한도를 공유하여 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이때 합동사무소 또는 법인이 피보험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합동사무소 및 법인에 소속된 법무사가 각각의 피보험자가 됩니다. 또한 보상한도는 각 법무사의 1 인당 한도가 아니며 보험가입신청한 합동사무소 또는 법인 소속 법무사가 공유된 보상한도를 갖는 것으로 이해하시면됩니다.

문 14) 합동사무소 및 법인에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 처리 방법은 어떻게 됩니까?

합동사무소 및 법인 소속 법무사가 보상한도를 공유하여 가입한 경우에는 보상한도액과 자기부담금을 공유한 개별가입으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사고가 발생한 건에 대한 업무를 수행한 법무사의 책임액을 산정한 후 합동사무소 및 법인에서 가입한 보상한도액의 범위 내에서 보상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A 합동사무소의 A, B, C, D 네 명의 법무사가 보상한도액 2 억/ 4 억원, 자기부담금 5 백만원으로 보험에 가입하였고 그 중 A 와 B 가 서명을 하고 업무를 수행한 건이 사고가 발생하여 손해배상액이 3 억인 경우, A 와 B 의 책임비율과 무관하게 2 억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위의 사례에서 손해액이 2 억이라면 자기부담금 5 백만원을 차감하고 1 억 9 천 5 백만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한편 위의 사례에서 A 와 B 의 책임액은 동일하고 손해액이 2 억인 상황에서 A 는 보험에 가입하였지만 B 는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라면 보험회사는 A 의 책임액인 1 억원에 대하여 보험조건에 따라 자기부담금 5 백만원을 차감한 9 천 5 백만원을 지급하거나 A 에게 1 억 9 천 5 백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하고 B 에게 1 억원의 구상권을 행사하게 됩니다.

문 15) 합동사무소 및 법인에서 한 명의 법무사가 탈퇴하고 새로운 법무사가 들어온 경우 보험의 대체가 가능합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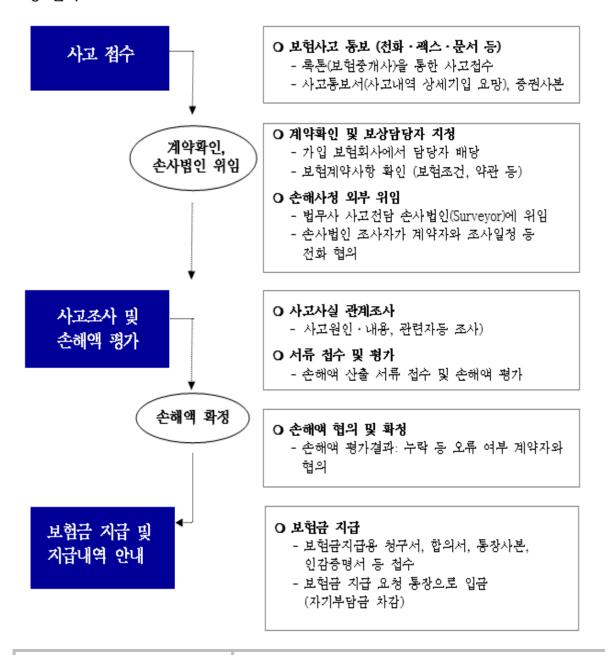
합동사무소 및 법인 소속 법무사의 가입은 보상한도액과 자기부담금을 공유한 개별 가입이므로 대체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새로 들어온 법무사가 보험담보를 받고자한다면 별도로 추가보험료를 납입하고 가입을 하여야 하며 소급담보일은 별도로보험료를 납입한 날이 됩니다.

문 16) 록톤코리아(LOCKTON KOREA)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록톤코리아는 보험회사와는 별도의 독립 단체인 보험중개인으로 <u>고객의 위험을</u>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다수의 보험사가 취급하는 상품을 비교하여 고객에게 최적의 상품을 권유 또는 주선 하는 등 보험계약체결의 전반적인 과정에서 계약자의 대변인 역할을 수행하며 사고 발생시에는 사고 통보로부터 보험금 수령에 이르기까지의 제반업무를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 * 상기 내용은 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작성된 상품 안내용이며 법무사전문인배상책임 보험의 가입과 보상은 청약서상의 보험조건 및 보험약관에 따릅니다. 아울러, 약관은 영문기준이며 번역본은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 * 보상 절차





전문인배상책임보험 가입서비스

https://www.locktonpi.com

전화: 02) 2011-0300

팩스: 0503-8379-2008, 02)2011-0301

담당: 이순옥 상무, 윤원 이사,

윤자영 부장, 박순정 과장, 이채은 주임